

전화상담·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

1.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

-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

<전화 상담·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>

- ◇ (취지)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
- ◇ (내용)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실시
- ◇ (대상) 전화 상담·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
- ◇ (수가) 가-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(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)
*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(기타내역)에 사유(전화상담)를 기재·청구
- ◇ (본인부담금 수납)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
- ◇ (처방전 발급)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*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
*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
- ◇ (의약품 수령)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(유선 및 서면) 의약품을 조제·교부(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)

- ◇ (기타) 본인확인,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
- ◇ (시행시기) 2.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(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)
- ◇ (추진근거)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9조, 제40조 및 제44조, 「의료법」 제59조제1항,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조

2.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

-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

<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>

- ◇ (조건)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
- ◇ (수가) 가-1 외래환자 진찰료 나. 재진진찰료 주7.에 따라 산정 (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)
- ◇ (시행시기) 2.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(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)
- ◇ (대리수령인)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(대리수령자의 범위)
 - ①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,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환자의 형제자매
 -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
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
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- ▲ 교정시설 직원 ▲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- ▲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(시설직원 등) ▲ 미성년자(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)

◇ (구비서류)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(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)

- (의료기관 제시용)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,
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*

* 친족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/ 시설종사자 : 재직증명서

- (의료기관 제출용)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*

*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,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며
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가능(입법예고안 '대리처방 확인서'에서 변경됨)

참고1

주요 질의 답변

Q1. 전화 상담·처방에 참여하려면 신청이 필요한지?

-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

Q2. 산정 가능한 진찰료는?

- 전화 상담 또는 전화처방은,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
- 다만, 소아, 야간·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
- 대리처방은 가1 외래환자 진찰료, 나. 재진진찰료 주7.에 따라 산정

Q3.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 산정 여부

- 전화 상담 또는 처방시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, 가24-1 전문병원
의료질평가 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

Q4. 전화 상담·처방 및 대리처방 관련 본인부담률은?

-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*과 동일하게 적용함

*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[별표2]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3]

Q5. 전화 상담·처방 및 대리처방 관련 진찰료 청구방법

- 명세서 줄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(기타내역)에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

*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

구분	발생단위 구분 ^{주1)}	줄번호	특정내역 구분	특정내역 ^{주2)}
전화상담	2		JX999	전화상담
대리처방	2		JX999	한시적대리처방

주1)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'2'기재

주2) 한글로 기재하되,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

Q6. 전화 상담은 환자 본인이 의사와 직접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

- 환자 직접 전화 상담이 원칙이나, 환자가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(장애인, 소아 등)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 가능

Q7. 전화 처방에 따라 약 조제·교부가 가능한 약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?

- 요양기관업무포털 > 심사기준종합서비스 > 공지사항 > 전화상담·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(2020년 1월 기준)으로 확인할 수 있음

참고2 대리처방 관련 법령

<의료법 시행령>

제10조의2(대리수령자의 범위)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
2.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3. 환자의 형제자매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5.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<의료법 시행규칙>

제11조의2(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)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(이하 “대리수령자”라 한다)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.

1.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그 사본
 2.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 - 가.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나.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: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
 3.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. 다만,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.
- ②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.